

제274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 15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 15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82
- 나. 제출자: 강선영 의원 외 5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9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9월 9일

2. 제안이유

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분들이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서구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인,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3조)

라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마.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15조)

바.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 ~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조부서 : 어르신복지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9. 4. ~ 9. 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오신 노인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은

-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
-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건강증진, 사회문화활동 장려,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,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지원, 경로우대 시책, 경로행사 지원 등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-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보칙부분으로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탁,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,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또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게 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사업 지원 조례」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

○ 노인복지사업은 「노인복지법」을 근간으로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법」, 「치매관리법」 등 다양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-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「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또는 「노인복지 기본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¹⁾하고 있음.

- 강서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 87,020명(2020년 7월말 기준)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(90,987명)에 이어 2위이고

- 전체인구 대비 비율로는 14.8%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%를 초과하였음
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

1) 서울시 자치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(또는 기본조례) 제정현황 : 2020. 8월 현재 서울시 22개구 제정 시행 중 (강서, 금천, 송파 제외) - 내용 및 규정 범위 등에 차이는 있음

○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-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-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, 제정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됨

참고

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